

## [ 정 정 대 비 표 ]

### 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편 드 명	BNK공모주플러스1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정 정 서 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 정 사 유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,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반영 등
효 력 발 생 일	2021년 11월 05일

### ■ 정정대비표

#### 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 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총보수.비용 반영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1.10.24 기준으로 업데이트
[요약정보]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1.10.24 기준으로 업데이트
[요약정보] 운용전문인력	-	-	- 2021.10.24 기준으로 업데이트

#### 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 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총보수.비용 반영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1.10.24 기준으로 업데이트
[요약정보]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1.10.24 기준으로 업데이트
[요약정보] 운용전문인력	-	-	- 2021.10.24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 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종 류 및 형태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(고난도금융투자 상품 명시)	가. ~ 마. (생략) 바. <신설>	가. ~ 마. (현행과 동일) <b>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 부 : 해당사항 없음</b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최근 결산기 재무 제표 확정	-	- 2021.11.05: 최근 결산기 재무제 표 확정,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 항 반영 등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-	- 2021.10.24 기준으로 업데이트
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	투자전략 변경	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[투자전략] A등급 이상 우량채권 등 <b>(80% 이상)</b> <b>(변경 전1)</b>	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[투자전략] A등급 이상 우량채권 등 <b>(95% 이하)</b> <b>(변경 후1)</b>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가. ~ 다. (생략)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 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<b>1.7727%</b> 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<b>5등급(낮은 위험)</b> 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결산일 : 2020.08.06)	가. ~ 다. (현행과 동일)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 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<b>2.0821%</b> 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<b>5등급(낮은 위험)</b> 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결산일 : 2021.08.06)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	나. 과세 (1)~(3) (생략)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- 납입요건 :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 - 세액공제(2014.1.1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) :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 - 다만,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)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	나. 과세 (1)~(3) (생략)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- 납입요건 :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(이하 "전환금액"이라 한다)  - 세액공제 : 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. 단, 2022년 12월 31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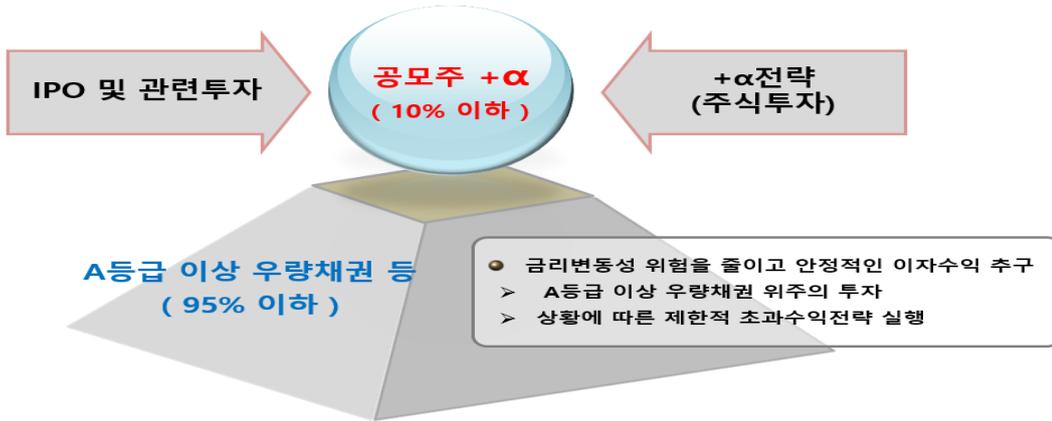
		<p>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%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다만, 종합소득금액 1억원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)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</li> </ul> <p><b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세액공제</b>(2015.1.1 부터) :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%.</li> <li>- 다만,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)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5%</li> <li>- 다만, 종합소득금액 1억원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)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</li> </ul>	<p>까지 「소득세법」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</p> <p>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</p> <p>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</p> <p>[세액공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li> </ul> <p><b>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세액공제</b> :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</li> </ul>
--	--	--	---

		<p>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%</p> <p>※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</p>	<p>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</p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1.10.24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반영 등	- 회사 연혁 추가 - 자본금: 260.5억	- 2021.10.24 기준으로 업데이트 - 회사 연혁: 2021.05 자본금 증자 (+156.25억) - 자본금: 416.75억

(변경 전1)



(변경 후1)



<끝>.